

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접수자		확인자	
신청인	성명			생년월일			
	주소			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			
응시자	성명(한글)		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			
	주소						
	국적	전화번호(자택)			사진 (3.5cm × 4.5cm) (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상반신을 촬영한 것)		
		휴대전화번호					
		전자우편					
응시 면허의 종류	[]제1급 조종면허, []제2급 조종면허, []요트조종면허						
면허시험 면제 과목		필기시험			실기시험		

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응시합니다.

$$\frac{1}{\Gamma} \quad \frac{1}{\Gamma\Gamma} \quad \frac{1}{\Gamma\Gamma\Gamma}$$

응시자 (서명 또는 인)

해양경찰청장 귀하

제출서류	1. 사진(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.5센티미터, 세로 4.5센티미터인 것) 1장 2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가. 응시자가 14세 미만(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 18세 미만)인 경우에는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나. 응시자가 면허시험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	수수료 필기시험: 4,800원 실기시험: 64,800원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응시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국적동포인 경우: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신청인은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국가가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.
- 응시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과 응시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해야 합니다.
-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.
-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11조에 따라 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인하여 해당 시험의 중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조종면허가 취소됩니다.